

[붙임4]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적용사항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1)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 2) 항목별 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3호, 2018.11.6.)에 근거하여 전력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3)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 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한다.
- 5)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생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 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7) 전력거래소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8)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3호, 2018.11.6.)」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8호, 2019.4.10)」,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따른다.
-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10)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아래 업체별 등급 배분표를 적용하며, 평가업체수가 30개를 초과할 시,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를 적용하여 등급별 업체수를 산정(소수점 아래는 절사)하며,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중'업체능력평가'상대평가 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11) 입찰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이하“입찰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수행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과정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으로 용역수행이 가능할 때 잔여 용역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한다.

12) 입찰적격자 선정 결격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력거래소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3. 항목별 세부사항

-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총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동계약 입찰 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제한** 한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금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본 사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복잡사업을 적용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본 용역은 총괄 책임평가자 포함 9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 참여평가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총괄평가자 : 1인(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환경분야)
 - 분야별책임평가자 : 4인(환경분야)
 - 분야별참여평가자 : 4인(환경분야)
 - ※ 환경(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에 한함
 -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 환경분야 총괄, 책임 및 참여평가자는 각각 전문분야를 서로 중복 투입할 수 없으며,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간 전문분야는 중복 가능하고, 대기관리 및 해양분야는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구분	자격조건	분야	가중치	인원
총괄 책임평가자	특급이상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환경분야	100%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고급이상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환경분야	50%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초급이상	환경분야	25%	1인
		환경분야	25%	1인
		환경분야	25%	1인

-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9) 참여평가자 실적 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 12) 업체능력평가
 - 사업책임평가자(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력거래소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기술능력(1점) : 사업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요점, 용역성공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	0.9	0.8	0.7	0.6
등급배분	10%	20%	40%	20%	10%

- 업무관리능력(1점) : 사업책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	0.9	0.8	0.7	0.6
등급배분	10%	20%	40%	20%	10%

4. 총괄 배점표

평가항목 및 요소		환경부고시	적용(평가기준(안))	
		배점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00	
1. 환경영향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소계	68	68	
	(1)자격 및 등급	14	14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3)	(3.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6)	(6.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5)	(5.0)	절대평가
	(2)경력	17	17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6)	(6.0)	절대평가
	(3)실적	17	17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6)	(6.0)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17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4)	(4.0)	절대평가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7)	(7.0)	절대평가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6)	(6.0)	절대평가
	(5)교육훈련	2	2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1	절대평가
	(8)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소계	32	32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14	
	(가)수행건수	(7)	(7.0)	절대평가
	(나)수행금액	(7)	(7.0)	절대평가
	(2)신용도	9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6.0)	절대평가
	(나)제정상태건실도	(3)	(3.0)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6	
	(가)개발실적	(2)	(2.0)	절대평가
	(나)투자실적	(2)	(2.0)	절대평가
	(다)활용실적	(2)	(2.0)	절대평가
	(4)공동도급	1	1	
	(1)제1종업체↔2종업체 공동도급	(0.5)	(0.5)	만점
	(2)제1종업체↔소기업(1,2종포함) 공동도급	(0.5)	(0.5)	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	2	2	
(가)과업이해도		(1.0)	상대평가	
(나)접근방식의 창의성		(1.0)	상대평가	

5. 항목별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평가자	(5)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총괄	100%	95%	90%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	100%	100%	100%	90%	80%			
				※ 구분란 중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되, 202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평가자	(6)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p> <p>○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p> <p>○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첨부1] 참조) : 1.0 - 기타사업 : 0.6</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적건수</th> </tr> <tr> <th>15건이상</th> <th>13건이상</th> <th>11건이상</th> <th>9건이상</th> <th>9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총괄</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분야 책임평가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분야 참여평가자</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p>※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p>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100%	100%	100%	90%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100%	100%	100%	90%	80%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p> <p>○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sum [\text{계약금액} \times (\text{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text{총계약기간}) / 10\text{인}]$ </p> <p>※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p> <p>○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5) 교육훈련	[2]	
			<p>○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p> <p>※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p> <p>※ 2020.1.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p>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p>○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p>
	(7) 이적계수		
			<p>○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p> <p>※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 실적	[14]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건수</td> <td>15건이상</td> <td>12건이상</td> <td>9건이상</td> <td>6건이상</td> <td>6건미만</td> </tr> <tr>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유사평가 실적금액</td> <td>500%이상</td> <td>400%이상</td> <td>350%이상</td> <td>300%이상</td> <td>300%미만</td> </tr> <tr>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구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100%	90%	80%	70%	60%
구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100%	90%	80%	70%	60%																										
유사평가 실적금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별점에 따라 감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 재정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A-</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대기업/중기업</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소기업</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able>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	회사채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90%	80%	70%	소기업	100%	100%	90%	80%
	회사채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90%	80%	70%																								
소기업	100%	100%	90%	8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 개발실적	(2)	○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신기술</th> <th>특허</th> <th>실용신안</th> <th>연구보고서*</th> </tr> <tr> <td>계수</td> <td>1.0</td> <td>0.6</td> <td>0.3</td> <td>0.1</td> </tr> </table>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r> <td>특허</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실용신안 / 연구보고서</td> <td>1.0</td> <td>0.8</td> <td>-</td> </tr> </table> ※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수	1.0	0.6	0.3	0.1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수	1.0	0.6	0.3	0.1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투자실적	(2)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3% 이상</td> <td>3.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0% 이상</td> <td>2.0%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	1.8	1.6	1.4	1.2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p>○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 1.0 \times A \times B \times C)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times C)$</p> <p>※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p> <p>(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p> <p>(B) 등급별 계수</p> <p>(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 style="text-align: center;"><활용건수 및 금액(A)></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활용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급별계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신기술</td> <td>특허</td> <td>실용신안</td> </tr> <tr> <td>계수</td> <td>1.0</td> <td>0.6</td> <td>0.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 / 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6</td> </tr> </table> <p>※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된 것으로 한정한다.</p>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분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수	1.0	0.6	0.3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공동도급	[1]	<p>○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또는 분담이행) : 0.5(만점)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p>※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p> <p>※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p> <p>※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p>														
	(5)업체능력평가	[2]															
	(가)기술능력	(1)	<p>○ 사업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 수행상 주요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r> <tr>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10%</td> <td>20%</td> <td>40%</td> <td>20%</td> <td>10%</td> </tr> </table>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10%	20%	40%	20%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10%	20%	40%	20%	10%													
(나)업무관리능력	(1)	<p>○ 사업책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r> <tr>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10%</td> <td>20%</td> <td>40%</td> <td>20%</td> <td>10%</td> </tr> </table>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10%	20%	40%	20%	10%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10%	20%	40%	20%	10%													

5. 평가자료 작성순서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신청공문 1부

2)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 (상·하권 1부)

가) 평가 증빙자료 (상권)

- (1) 표지(서식 1)
- (2) 목차
- (3)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서식 2)
- (4) 참가자격업체 증빙서류
- (5)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서식 2-1)
- (6) 공동수급협정서
- (7) (서식 4~서식 11)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 (8) 기타 평가에 참고 되는 사항

나) 평가자료(하권)

- (1) 표지 (서식1-1)

- (2) 목차
-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사본)
- (4) 참여건설기술자 연명부 (서식3)
- (5) 참여건설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서식4)
- (6) 업무여유도(서식 5)
- (7) 참여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실적(서식 6)
- (8) 과업의 이해도 및 이적계수(서식 7)
-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8)
- (10) 신용도 (서식 9)
-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0)
- (12) 공동도급현황 (서식11)
- (13) 자기평가서 (서식 12)
- (14)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원본 (서식 13)

나. 제출양식

- 1) 크 기 : A4용지(210mm × 297mm)
- 2) 지 질 : 백상지 100g/m²이하
- 3) 표 지 : 백색아트지 150g/m² 무광택
- 4) 제 본 : 무선양면 상철로 하고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며 하단부 중앙에 페이지를 반드시 표기(예 - 1 -, - 2 -,).

다. 감점사항 (최대3점)

- 1)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의사항 누락 : 0.5점/건
-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누락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 3)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 0.1점/건
- 4)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0.2점/장
- 5)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에 업체명, 실명 사용시 : 0.2점/장
- 6) 제본형식 등 위반 : 0.5점
- 7)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페이지수 초과, 양식 미사용시 : 0.2점/장

[첨부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유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총 용량이 500MW 이상인 화력(석탄, LNG)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345kV 이상 지상송전선로로서 10km 이상인 송전선로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765kV 이상의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6만㎡ 이상, 녹지지역은 1만㎡ 이상인 옥외변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별표3 제3호 에너지 개발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 상기 평가대상에 대한 시설 또는 설비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한 경우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첨부 2] 사업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표
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기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내용 (요약)					
	기업부담금 내역	구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단체	장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1)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2) ○○분야 책임기술자	○○○		○○○○○○○○○
3) ○○분야 책임기술자	○○○		
4) ○○분야 책임기술자	○○○		
5) ○○분야 책임기술자	○○○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공사명			

[서식 1]

접수번호	
------	--

2019. 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증빙자료-상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서식 1-1]

접수번호	
------	--

2019. 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하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각서

본인은 귀사에서 발주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가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 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19. . .

-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상·하권 1부 포함)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사장 귀하

[서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별첨 양식 참조)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등 첨부

참여기술자 연명부

구분	성명	자격 등급	소속 및 직위	생년 월일	학력 (학위)	해당분야 기술자격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 평가자	환경								
	환경								
	환경								
분야별 평가자	환경								
	환경								
	환경								

참여기술자 등급·경력·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명		소속회사		생년월일	
기술등급 (직무/전문)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토목 특급/ 토목구조 특급)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경력	468일÷360일= 1.3년		실적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평가 구분)	참여기간			참여 일수 (일)	적용 일수 (일)	발주처	참여당시	
			참여일	준공일	참여 일수				소속 회사	직위
계			000일							
1		환경 평가 (1.0)	10.01.01	10.12.31	365일	365	365			

3. 실적

연번	사업명	금액 (백만원)	구분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참여기간		환산건수 (건)	발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참여일	준공일				소속 회사	직위
계					000건						
1			환경 (1.0)	산단 (1.0)	10.01.01	10.12.31	1				
2			기타 (0.6)	도로 (0.6)			0.36				

<작성요령 등>

-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당사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구분하여 기재
 - ③ 준공일 순으로 구분하고 제일상단 별도의 난에 건수 합계를 기재
 -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기재
 - ⑤ 사업개요란에는 당해용역의 계약금액을 필히 기재
 - 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서식 제14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
 - ⑦ 참여기술자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 ※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 및 실적 작성부분은 경력증명서상에 반드시 형광펜으로 체크

[서식 5]

업 무 여 유 도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중복금액 (백만원)	점수	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참여평가자				
계			점	

※ 업무여유도 세부산출 자료(산정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참여분야 : , 홍길동

NO	용역명	발주처	총사업금액 (백만원)	사업기간	참여구분	1년내 잔여일수	총계약기간	중복금액 (백만원)
1								
2								
3								
	계							000.0

<작성요령 등>

- ①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신고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단, 2016.1.21.(환경부 고시 시행일)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분야책임기술자이상으로 참여한 경우만 평가하고 2016.1.22.이후 계약된 용역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도 평가. 또한 2016.1.21.이전에 계약되었더라도 2016.1.22. 이후에 변경되어 투입된 경우는 업무여유도에 반영되어 평가)
- ② 사업기간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차수와 상관없이 전체용역에 대한 착수일과 과업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 ⑤ 참여구분 : 참여형태(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작성

[서식 6]

참여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성 명	교육과정	시행기관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작성요령 등> ①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7]

과업의 이해도

참가분야	성 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과업참여분야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 <작성요령 등>
-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첨부
 -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년 월)	기 간 가 증 치	출원자수	적용건수	환산점수
신기술						()건	()점
특 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계						()건	()점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건설부문 총매출액 (A)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비율(%)
		소계 (B)	기술인력 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비	
사	소계(C)				
	년				$B \div A \times$ 공동참여비율
	년				
	년				
사	소계(D)				$B \div A \times$ 공동참여비율
	년				
	년				
	년				

3. 활용실적

구 분	명 칭	기술내용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활용 건수	활용금액 (억원)
기술 활용 실적	신 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 주) 1.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

공 동 도 급 현 황

1. 공동도급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만점)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_____ / _____ (% :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합 계		100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14.0		
	총 괄	3.0		
	분야별책임평가자	6.0		
	분야별평가자	5.0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0		
	총 괄	4.0		
	분야별책임평가자	7.0		
	분야별평가자	6.0		
	(3)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0		
	총 괄	4.0		
	분야별책임평가자	7.0		
	분야별평가자	6.0		
	(4)업무여유도	17.0		
	총 괄	4.0		
분야별책임평가자	7.0			
분야별평가자	6.0			
(5)교육훈련	2.0			
(6)과업의 이해도(前次)	1.0			
(7)이적계수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32.0		
	(1) 환경영향평가지등 수행실적	14.0		
	(가) 수행건수	7.0		
	(나) 수행금액	7.0		
	(2) 신용도	9.0		
	(가) 부실평가자및부실업체등	6.0		
	(나) 재정상태 건실도	3.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0		
	(가) 개발실적	2.0		
	(나) 투자실적	2.0		
	(다) 활용실적	2.0		
	(4) 공동도급	1.0		
	(5) 책임평가자능력평가	2.0		기재하지 말것
3. 감점				기재하지 말것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3]

접수번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2019. 00.

- 글 씨 체 : 휴먼명조
- 작성매수 : 5Page이내
- 글씨크기 : 제목 18Point, 소제목 15Point 이내, 내용 13Point 이내
- 흑백으로만 작성하며,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위반시 감점)
- 본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것(위반시 감점)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방지시설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자연환경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